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채용관리 시행세칙

제정 2025. 01. 0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처 처무규정 제13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법령·정관 및 본회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 본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을 따르며 그 외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응시결격사유) 사무처 처무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조(시험의 방법) ① 일반직 채용시 사무처 처무규정 제13조 및 제13조의16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외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배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회장은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채용 전문업체에 채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채용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사업실적 및 경영상태 등 계약 이행능력 보유여부를 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채용 전문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 방안 등

을 마련하고, 채용 전문업체의 보안유지 위반 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채용 전문업체가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를 범한 경우에는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회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 상의 유의 사항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원서접수)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입사지원서를 위탁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및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②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별지 제1호서식>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고용노동부)」를 활용하며,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필기시험 및 출제수준) ①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채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험의 출제 수준은 각 직급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7조(채용전형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응시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별 가점 등 세부사항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4.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신규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 자격증 자격등급별 가산점수를 [별표 4]과 같이 적용한다.

제8조(신체검사) ① 사무처 처무규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는 의료기관의 “일반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되, ‘국가 건강검진 결과(입사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가 포함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제출한다.

- ③ 채용신체검사 발급 비용 발생 시 체육회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직원 채용의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직무수행에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계이력 확인) ① 회장은 최종합격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최종합격자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용부서의 점검) ① 채용부서의 장은 채용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용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채용부서의 장이나 직원을 채용과정에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부서가 참여하여야 하는 과정은 위탁업체 계약, 문제 추출·인쇄·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전체를 포함한다.

- ③ 사무처 처무규정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부정합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제출받아야 한다.

- ④ 채용부서의 장은 면접위원에게 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접위원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개인정보 제공금지, 차별적 질문 금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채용계획 수립 등 채용 절차 전반에 관여하고, 응시자 제출 서류 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채용 담당자, 채용 담당 부서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12조(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등)** ① 채용담당 부서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완료일 14일 이후부터 180일 기간의 범위 내에서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정하고 지원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직원과 관련된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는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25. 01. 06.)

이 세칙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형절차별 최대 합격배수(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 서류전형-면접전형 | 4배수 | - | 1배수 |
| 면접전형 | (적부) | - | 1배수 |

※ 모집분야별 확정배수는 최대 합격배수 내에서 모집인원, 예상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계획 시 수립함.

[별표 2]

필기 시험 과목표(제6조제1항 관련)

1. 공개채용시험

| 구분 | 시험과목 |
|-----|---|
| 일반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직무수행능력평가(체육상식) |

[별표 3]

채용시험 가점대상자 및 가점(제7조제1항 관련)

* 가점의 인정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

| 가점대상 | 적용대상 | 가점 | 서류 전형 | 필기 전형 | 면접 전형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를 적용 |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 ○ | ○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 | | ○ | |
|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15~34세) | 만점의 5% 가점 | | ○ | |
| 저소득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만점의 3% 가점 | | ○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 | | ○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점의 3% 가점 | | ○ | |

<서류전형-면접전형>

| 가점대상 | 적용대상 | 가점 |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를 적용 |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 | ○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 | ○ | |
|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15~34세) | 만점의 5% 가점 | ○ | |
| 저소득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만점의 3% 가점 | ○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 | ○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점의 3% 가점 | ○ | |

[별표 4]

자격증 자격등급별 가산점수 평정표

| 자격증명 | 자격등급 | 점수 |
|---------|------|----|
| 정보처리 | 기사 | 5 |
| | 산업기사 | 3 |
| | 기능사 | 2 |
| 컴퓨터활용능력 | 1급 | 5 |
| | 2급 | 3 |
| 워드프로세서 | 단일등급 | 3 |
| 전산회계운용사 | 1급 | 5 |
| | 2급 | 3 |
| | 3급 | 2 |

* 2개 이상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채용심사 청렴 및 보안 서약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나,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접대·편의 등 일체의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를 회피하겠습니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임직원의 가족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받거나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서약하였으며, 서약사항 위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 또는 단체의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채용 예정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에 따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모두 인지하였습니다.

1. 본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이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은 체육계에서 활동한 모든 경력 사항(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이며, 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되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가 개인 및 민감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귀 기관의 채용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위한 사무업무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귀 기관의 담당자에게 위임합니다.
5. 채용일 이후 징계가 확정되거나 양정이 변경된 사실이 있을 경우, 귀 기관에 즉시 통지하겠습니다.

위 사항에 모두 (동의 / 미동의) 합니다

* 미동의하실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과 징계사실 확인이 제한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귀하